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~3.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4. W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4. W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정신탁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<u>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4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.</p>
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

<p>1. A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8</p> <p>2. (생략)</p>	<p>1. A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8 이내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